

부 산 가 정 법 원

심 판

사 건 2020느단524 성년후견 개시

청 구 인 갑

사 건 본 인 을

주 문

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
청 구 취 지

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.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.

이 유

가정법원은 질병,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(민법 제9조). 기록에 의하면, 사건본인은 2020. 1.경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(길랑-바레증후군)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,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말초신경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손가락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.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의 의식 수준은 또렷하여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고, 눈감박임을 통해

불편한 곳을 표현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. 나아가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등 회복가능성을 보이고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20. 7. 23.

판사 엄 지 아